

파주시환경기본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442
----------	-----------

제안년월일 : 1998년 12월 28일

제안자 :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1. 제안이유

- 시민의 권리 및 책무에 있어서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은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한할 요소가 있는바, 시민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여 의견을 제시토록 하려는 것이며,
- 환경보전시책 추진을 위해 설치코자 하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시·도별 환경기준을 심의하는 “지방환경보전위원회”와 명칭이 유사하므로 법 및 조례적용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그 명칭을 바꾸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의견을 제시토록 함.(안제6조제3항)
-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환경위원회”로 함.(안제19조)

파주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환경기본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제6조 제3항 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한다.

안제19조의 제목과 제1항중 “파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파주시환경위원회”로 하고 동항, 제2항 및 제5항중 “자문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비	고
제6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제6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제6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② (생략)	①~② (생략)	①~② (원안과 같음)				
③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 ----- ----- -----.	③ ----- ----- ----- -----.				
1. (생략)	1. (생략)	1. (원안과 같음)				
2. <u>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한다.</u>	2. <u>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한다.</u>	2. <u>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한다.</u>				
3~4. (생략)	3~4. (생략)	3~4. (원안과 같음)				
제19조(파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	제19조(파주시환경위원회)	제19조(파주시환경위원회)				
①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을 위해 파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 <u>파주시환경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u> -----.	① ----- <u>파주시환경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u> -----.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 ----- -----.	② “위원회”는 ----- ----- -----.				
③~④ (생략)	③~④ (생략)	③~④ (원안과 같음)				
⑤ <u>자문위원회</u>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⑤ <u>위원회</u> 는 ----- -----.	⑤ <u>위원회</u> 는 ----- -----.				
1~3. 생략	1~3. 생략	1~3. 원안과 같음				